

제416회 국회  
(임시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7)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3)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추가)

## 상정된 안건

1.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7) … 3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3) … 3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8
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48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윤혜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면서 의사진행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조은희 위원 감사하실 것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오늘 회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두 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축조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혼자 다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신정훈 지난 화요일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 조은희 위원 무슨 위원장이면 다 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의 간사님들의……

○ 조은희 위원 이렇게 단독진행 강행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 조은희 위원 개의를 단독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듣고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국민이 중요합니까, 이 재명이 중요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자, 조은희 간사님.

○용혜인 위원 적당히 좀 하세요. 이 재명이 왜 나옵니까!

○조은희 위원 지금 수도권 호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조은희 위원 민방위복은 왜 입으셨어요, 그렇게 중요하면!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의 의사진행 계속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고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안건상정 전에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안건상정 전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공청회를 거친 이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는.....

○조은희 위원 협의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소 이견이 있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그리고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계시는 골목상권을 보듬어 달라는 국민적인 요청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조은희 위원 국민적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재명 요구지요! 서영교 의원은, 왜 이 발의안은 공청회도 없이 올라옵니까!

○용혜인 위원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윤건영 위원 간사님,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시고 하시게요.

○위원장 신정훈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음은.....

○조은희 위원 민방위복은 왜 입으셨어요? 그것 벗고 하십시오!

○이해식 위원 꼬장 피우러 오셨어요?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동만 위원 위원님, 꼬장이 뭡니까, 꼬장이?

○용혜인 위원 적당히 좀 하세요, 좀! 회의장에 들어오셨으면 회의를 좀 합시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내가 드리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정동만 위원 아니, 품위를 좀 지켜가면서 하십시오. 꼬장이 뭡니까, 꼬장이? 우리가 꼬장 피우는 거예요, 지금?

○이해식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는데 좀 들어야지.

○정동만 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해식 위원 방해하시리 오신 거예요, 지금?

○정동만 위원 꼬장이 뭡니까, 꼬장이?

○이해식 위원 꼬장이 아니면 뭐예요?

○조은희 위원 본래 말씀이 그러세요. ‘꼬장’이라 그러고 ‘충견’이라 그러시고 말을 평상

시에도 저렇게 하십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의 심정 또 의사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협조하는데 위원장님, 꼬장이 뭡니까, 꼬장이. 저희들 하는 게 꼬장입니까?

○**용혜인 위원** 그만하세요, 좀.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조은희 위원** 마음에 안 들면 그만해라야.

○**정동만 위원** 국회에서 품위를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계속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퇴장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위원장 발언도 못 하게 그렇게 막으면 어떡해요?

○**위원장 신정훈** 제가 여러 차례 지금 협조 요청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의사진행 기회를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있을 법률안 심사가 우리 사회의 민생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7)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3)

(14시10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상정 전에 의사진행발언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하십니까!

○**정동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상정 전에 의사진행발언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은희 위원** 상정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상정 전에, 상정 후에를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정동만 위원** 아까 ‘상정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신 분 손 한번 들어 봐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모든 분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야 간에 균형을 맞춰서 제가 의사진행을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드리겠고요. 비교섭단체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안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여 가지고요. 별도로 진행을.....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의진행에 대한 의사진행이 아니라면……

○용혜인 위원 먼저 짧게 하고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정훈 우선은 잠깐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 도대체 오늘 이 법안의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경보까지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대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오늘 회의를 강행하면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에 직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광희 위원 이태원, 오송에서 아무것도 안 한 정부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달희 위원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인데……

○조은희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용혜인 위원 아니, 아까 본인은 그렇게 다 하셔 놓고……

○위원장 신정훈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이렇게 다급하게 쳐기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행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

○용혜인 위원 국민의 명령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은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었습니다. 최소한 절차는 지켜져야 할 것 아닙니까?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합니까? 최소 13조 원의 국민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입니다. 심지어 서영교 의원 법안은 공청회도 안 하고 어물쩍 끼워 넣었습니다. 헌법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국회 협치정신마저 깨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마저 무너뜨리는 법안 강행한다면 국민들께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소위에서의 검토도…… 지금 서영교 의원 법안은 공청회도 없는 졸속 추진에 불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사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소위조차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행안위는 행안위입니까, 민주당 위원의 단독 위원회입니까? 독자적인 회의진행을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중립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여당은 파트너가 아닙니까? 공식선언 하시는 겁니까? 22대 국회를 민주당 독재 의회로 전락시킬 겁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상정을 멈추시고 중립적인 위원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까?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자,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 중에서 이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출신 이상식입니다.

지금 폭우가 엄청 왔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항의 좋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항의가 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와서 살피야지 왜 국회에 있느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는 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민생의 고통은,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국회에서는 물론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재난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그런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점은 이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제께 공청회에서도 그런 격론이 오갔는데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몇 개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하고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폐업률이 2023년 21.52%……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5대 은행 가계·기업 평균 연체율은 물론 민생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외식업체 폐업률이 21.52%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는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고요. 전문지식이 깊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대로 써 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논리가 어긋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정부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신규로 풀거나 상환 이자를 경감한다, 한마디로 금융 정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융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가게를 문 닫지 않도록 계속 열게 해 주겠다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장이나 가게가 당장은 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까 보았듯이 지금 폐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비가 없고 손님이 없으면 결국 가게가 망하고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손님들이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도록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 기간도 3개월이어서 빠르다,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켜 가지고 생산을 유발해서 경기를 회복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로 손님을 보내 준다 이것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골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절정일 때

1차 민생지원금 풀었지 않습니까? 그때 소비 동향이 한 달 사이에 저렇게 5%가 넘게 증가하는 저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께 공청회에서도 봤다시피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도 이전지출 승수가 1을 넘는다라는 이런 보고서, 또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 생산 유발 효과가 1.8배다, 이렇게 문서로도 통계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시고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장 선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정말로 재난 지원금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나와 계신 차관님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해 오셨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저는 도무지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나 너무나 의문이 듭니다. 엊그제 입법공청회를 했지만 쟁점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헌절을 지냈습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위헌적 요인을 이렇게 토론도 없이 마음껏 그냥 하루 입법공청회 짧게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헌적 요인뿐만 아니고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될지 민생소멸지원금이 될지 쟁점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입법청문회 그 짧은 시간 전문가하고 그냥 토론하는 걸로 하고 끝냅니까? 행정부의 입장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위에도 회부시키지도 않고, 법안소위에도 회부시키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한다? 도대체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행안위 위원으로 해서 인사말을 할 때 제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저는 4년 동안 17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왜 이렇게 후퇴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제가 특정 정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 그거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 볼게요.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표 한번 띄워 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효과가 엄청났지요.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KDI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5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한 달 동안 효과 뛰어났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쭉 가 가지고 그냥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 진작이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세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 저것은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카드 매출을 보더라도 그냥 5월 달 한 주만, 그냥 한 달만 바짝 매출이 늘어나고 그 외에는 또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어제 입법공청회 할 때 민주당이 불렀던 이동진 교수의 자료만 봐도 압니다. 2010년부터, 저기 나오지요, 상품 수출과 민간 소비에 있어서 괴리가 심하다고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24년을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짝 짧게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쭉 하향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 반면에, 그다음으로 넘겨 보십시오.

그러면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작년에 56조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권고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피치(Fitch)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는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 있다고 얘기를 올해 5월에 했습니다. OECD는 또 올해 우리들한테 한 게 하반기에는 내수회복 전망이 보이니까 2025년까지는 재정지출 억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국제기구들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국채로 발행하는 것을 기각시킨 겁니다. 아니, 저런 것은 안 됩니까? 왜 한 달짜리만 보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까?

한번 더 넘겨 보세요.

그러면 돈을 받게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한번 보시지요.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413만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에 가입돼 있는 것은 265만 개밖에 안 됩니다. 64.5%입니다. 비가맹점이 35.5% 됩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면 35.5%는 대상이 안 됩니다. 10원도 못 벌어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

그다음에 가입된 가맹점이 돈을 빈다고 하더라도 5억 원 이상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2020년도의 자료를 보면 5억 원 이상이 거의 절대 다수 41%를, 사십몇 %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체, 영세 자영업이라고 하는 3억 이하,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41%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게 경기도 거예요.

부산시 거 한번 보지요. 작년 겁니다. 부산시를 보면 나옵니다. 3억 이하 그게 차지하는 게 전체에서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31%밖에 안 됩니다. 5억 이상의 대형 매장, 주유소, 병원, 마트 이런 데만 돈을 벌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걸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 과연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를 결과로서 달성을 시켜 주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생소멸지원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소위원회 통해 가지고 논의를 안 하시냐고요.

○위원장 신정훈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합시다, 제발.

입법공청회 해 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킵니까?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대체토론에 가까운 이야기, 실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체토론 충분히 할 시간이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면 아까 제가 약속한 범위 내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도…… 여러분들의 말씀할 기회를 거의 99% 저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 밤을 새우더라도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짚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대체토론 할 가능성 있고 할 자신도 있고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토론,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보이시겠지만 행정안전부장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실장님도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각계각층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지역구 검단에 가면 수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손님이 이렇게 없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정부는 뭐 하고 있고 국회의원인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분명히 사람이 봄벼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빈 자리가 많고 가게에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폐업률만 해도 9%입니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서비스업이나 음식업 이런 내수와 직접 연관된 업종은 타격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입법공청회에서 다 같이 들으셨겠지만 많은 네 분의 진술인을 모셔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진술인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소비를 침체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진술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도 백번 천번 양보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은, 특히 행안위에 계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우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계신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조은희 간사님께서 지금 재난 현장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국

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시름 소리를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 없는 것,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내수 침체가 많이 된 것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면 도대체 우리나라 경기침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법인세 인하하면서 해결할 겁니까?

민생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물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됩니다. 소비 진작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세율 인하, 법인세 같은 경우는 5년간 1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 정부의 논리가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 주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조금 해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거다, 일종의 투자라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자체는 단순히 재정지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기업한테 법인세 깎아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해 주고 국민한테 재정정책 쓰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현금 살포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당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생회복지원금,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면 민생회복,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라도 내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전인수적인 통계를 가지고 여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나누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셔서 대체토론에 가까운 토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씩만 더 드리고 대체토론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석간신문입니다.

‘수도권·충청 150㎢ 더 온다. 오산·평택·당진 주민대피령’.

위원님들, 이것 보면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여기 행안부차관님이랑 공무원들 나와 계십니다. 저분들 이 시간에 한 분이라도 더 나가서 현장 뛰시면 한 명이라도, 집 한 채라도 더 견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요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민 명령이라고 그려셨지요? 죄송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25만 원 지원하는 거 51%가 반대하고 43%가 찬성했는데 이게 왜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의 명령이지.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요 다음 주 25일 날치기 처리하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민방위복 입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시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지원금입니다. 처음에는 좀 소비가 늘겠지요. 그런데 이게 국채 찍어 내면요 이자율이 늘고 그러면 부채가 늘면요 소비가 줄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비가 많이 늘겠지요. 그런데 소비 많이 늘면 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 많이 올라가면 소비 줄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현실 직시해야 됩니다.

올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예산은 7조 5000억 원입니다. 13조 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에 투입하면 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이 배로 늘어나요. 또한 올해 장애 관련 예산이 5조 22억 원이었습니다. 13조 원을 장애인 예산에 투입하면 장애인 복지는 북유럽 국가 못지않게 급상승합니다.

소비 이전 효과가 불투명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더 공익적입니까, 아니면 수혜 대상과 효과가 확실한 복지정책이 더 공익적입니까?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배터리 등 침단산업이 전기공급 부족으로 멈추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기를 보낼 송배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전은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했지요. 2036년까지 총 예산 56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조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인데요. 그런데 13조 원이면요 이 예산 4분의 1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13조 원 돈이면요 원전 한 기 짓고도 돈이 남습니다.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25만 원 지원금 보다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것이 더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생아를 낳는 가정에 50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지난해 신생아가 약 23만 명이었으니까 13조 원을 다 투입하고도 1조 5000억 원이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얼마를 쓰는 것보다 낫다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정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오늘 상정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의논하면 안 됩니다. 25일 날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요 헌정사에 정말 불명예스러운 기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상정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정부는 또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여당 위원이든 야당 위원이든 말씀하신 바처럼 절박한 상황입니다.

물의, 홍수에 의해서 희생되는 국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고 또 정말 서민경제,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어려운 민생 문제 때문에 정말 숨을 거두고 일상을, 지금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함께 구제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어제 수해 복구 현장을 가서 충분히 그 참상을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의원님들이 전라북도 수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 문제를, 마치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 위원회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법안의 이야기라든가 수치의 이야기라든가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은 충분히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을 단지 ‘이재명의 하명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전제하면 이 논쟁은 사실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편리한 논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드리겠다 말씀드린다면서 우리 민주당 세 번째……

○**배준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민주당’이라는 게……

○**위원장 신정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계속하시겠습니까? 한 분…… 하시겠습니까? 세 분까지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의사진행발언 더 기회 주고 그렇게 합시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하시던 말씀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세 분 하셨으니까 세 번째 채현일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영등포갑의 채현일입니다.

저는 아까 국민의힘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지금 민생이 거의 파탄 지경인데요. 세수가 평크 나오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지표에서도 지금 저성장, 과연 현 정부 들어와서 재정정책을 제대로…… 만약 그 정부가 잘했더라면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 회복지원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역에 갈 때마다 그래요. 장사가 잘되는 식당이 있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마 여기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법 목적에 있듯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 하라고 국회에 보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최근에 공청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처분적 법률이냐 아니냐 그 문제, 처분적 법률이라도 공익적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게 그 공청회 진술인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됐던 게 예산편성권 침해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학자 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은 특별조치법은 예산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게 재정지출 의무를 촉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게 주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있듯이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법률이 통과되면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고 촉구하는 것뿐입니다.

특히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2호에 ‘경기침체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3호에는 법정지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법정지출의 경우에는 현행 재정제도 안에서 이 법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례들이 다수 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법례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성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KDI 나 또 다수의 국책기관에서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 26~40%대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그리고 국책기관에서 인정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생경제의 위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할 때 국회가 나서서 독려하고 또 입법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게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부자 감세, 세금 감면, 금리 인하 등으로 해 봤지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번 특별조치법이 공청회에 나왔던 그런 대다수 의견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조승환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예.

○조승환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먼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양 위원님하고 조승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구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숫자를 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 들어가기 전에 용혜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사실 이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위원회가 해야 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잠깐만요. 대체토론은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이후에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에 한정해서……

○**용혜인 위원** 예,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요청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되는 해인데요. 21대 국회 당시에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속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여순사건위원회의 심의는 단 아홉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가 총 7546건인데요 그중에 진실규명은 191건 중에 0건이 처리되었고요. 희생자 결정은 7355건 중에 708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신고 건수 중의 고작 9%만이 처리된 것인데 2년 6개월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참담하고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순사건위원회의 조사 기한이 2024년 10월 5일, 몇 달 남지 않습니다. 곧 종료가 됩니다. 여순사건이 48년 11월 당시의 기록만 해도 피해자가 1만 3131명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폭력이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대로 진상규명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행안위에서 여순사건위원회를 불러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은 분명히 우리 행안위의 소관 법률이고요, 어제 행정실에 제가 따로 확인도 했는데 행안위 차원의 업무보고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진행하는 건 어렵더라도 8월 중에는 업무보고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만약 업무보고가 어렵다면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상규명을 염원해 온 유족분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하고 국회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이루어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동료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업무보고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정중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종양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입만 열면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이것을 입을 맞춘 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만 지원되는 것 같으면 민생이 그야말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참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의 회원국이 가장 많은

국제기구의 대표를,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의 총재를 제가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많은 세계적 지도자를 만나면서 어떤 국가가 흥하고 어떤 국가가 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미의 베네수엘라라든지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든지 그 잘살던 나라들이 망했잖아요. 망했던 그 근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식의 나눠 주기식, 현금 살포식 이런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의사진행발언 맞습니까?

○**김종양 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행안위 운영 절차의 민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왜 우리 행안위는 아직 소위가 구성 안 됐습니까? 원래 모든 법안은……

○**박정현 위원** 아니,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다니요.

○**김종양 위원** 모든 법안이 발의되고……

○**조은희 위원** 소위가 무슨 전체회의입니까?

○**박정현 위원** 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수정당이 왜 참여를 안 해야 됩니까?

○**용혜인 위원** 정말 유감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김종양 위원** 모든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소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건영 위원** 오늘 소위 구성합시다.

○**김종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위를 거치지 않고 소위의 토의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안건을 갖다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 법안을 갖다가 편법, 꼼수식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속히 통과시켜 가지고, 상임위 통과시켜 가지고 25일 날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폭우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도 오늘 상임위를 소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법안이 회부되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서영교 법안 공청회 거쳤습니까? 공청회 그저께 했습니다. 서영교 법안 언제 상정됐습니까? 벌써 20일 이상이 훨씬 더 경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때도, 공청회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이 법안을 갖다가, 서영교 법안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소위 문제라든지 서영교 법안의 어떤 그런, 상임위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상정한 것 등등으로 봤을 때 우리 상임위가…… 맨날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법대로, 법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우리 상임위 첫 번째 법안입니다. 첫 번째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꼼수식, 탈법식 이런 식으로 날치기식으로 말이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까?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한 후에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를 갖다가 법대로, 법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이 법의 위헌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위헌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안경 색깔을 쓰고 있다 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토론을 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기에는 한계치에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충분히 지난번 공청회 때 토론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결정하는 게 좋다.

현재 지금 폭우로 인한 재난, 심각합니다. 이 재난에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돈이 필요한 시기가 더 빨리 오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얼마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미꾸라지가요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는데 미꾸라지가 물 한 모금이 없었습니다. 이 미꾸라지는 물 한 모금이 필요한데 지나가는 사람이 좀 참으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폭우가 쏟아지니까 장마가 지면 잘 살 거라고 했어요. 그 래 갖고 미꾸라지는 장마를 기다리기 전에 물 한 모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과 흡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소 이론과 정책 효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선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물에 들어가서 살려내야지 이 사람에게 ‘가만 있어, 너에게 수영 기술 가르쳐 줄게. 좀 있으면 구명보트가 올 거야’라고 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이론과 어떤 가치를 떠나서 이제 죽어가는 소상공인 지금 살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의사진행발언에 한정해서 조승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초선인데 여러 재선 위원님, 3선 위원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느냐 대체토론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보다는 대체토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대체토론할 수 있는 것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하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일정에 대한 합의는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정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열린다라고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공청회에서 사실 위현성 문제라든지 예산편성권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차등 지원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놓고 계신 부분들이니까 재정정책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토의를 하려 그러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어제 제헌절이었습니다. 어제 제헌절 하루 지나고 공청회 바로 열고 이 상임위 열어 가지고서 법안심사소위가 구성 안 되었다는 평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보고도 어느 소위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안심사 안 하고 여기서 대체토론하고 축조심사하고 이게 통상적인……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이나 또 위성곤 위원님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국정을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경우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강력히 촉구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하고 이때까지는 공청회 사흘 만에 여는 부분, 상임위 열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요구한다, 잘못에 대한 뭘 요구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법안심사소위 구성해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고 거기에서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전체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여기서 다시 토론하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김종양 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세요.

○위원장 신정훈 지금 제가 진행하는데 무슨 절차가 안 지켜진 겁니까?

○김종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신정훈 발언권 얻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중간에 그렇게 발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김종양 위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날치기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박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우리도 한 명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혜인 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진행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을 지금 이렇게 병합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셨는데 이 민생회복지원금과 서영교 의원님 안이 아주 유사 법안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처리

하지 않고 잔류시키면 그 법안은 앞으로 계속 남아 있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병합 심사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법안심사 절차 과정에서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소위 문제는…… 지금 우리 국회 원 구성이 얼마나 유사 이래 가장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위원장에게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두 간사님들끼리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바삐 진행해야 될 법안심사를 전체 토론에서, 대체토론에서 충분히 하겠다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도 역시 소위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이 여러 차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또 국회 여야 간의 합의의 정도와 속도가 국민들의 삶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체토론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그렇게 회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자꾸 쟁점화시키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지금 국민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하십니까? 그것 반대하시는 것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서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은희 위원** 초점 흐리지 마세요. 지금 행안위 아닙니까?

○**이해식 위원**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서 왜 이렇게 토론을 방해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거는 순수한 민생법안입니다. 민생법안을 왜 쟁점법안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은희 위원** 해병대법이 여기서 나옵니까?

○**위원장 신정훈** 들어 보세요.

○**박정현 위원** 조은희 간사님, 제가 초선이기는 하지만 재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 주십시오. 초선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총선 때 유권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얘기 듣는 것이 민생입니다.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 법안을 미뤄야 되는 겁니까?

○**조은희 위원** 엉뚱한 소리를 안 하시면 품격을 지키지요.

○**박정현 위원** 엉뚱한 소리 아닙니다. 들으시지요.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찬성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찬성률이 높은 여론

조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 저희 따박따박 지금 밟고 있습니다. 소위 구성 못 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소수당을 배제하자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집권여당에서 폭넓게 소수당을 함께 끌고 가야지 왜 소수당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킵니까? 그러면서 왜……

○**김종양 위원** 다수당이 양보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수당이……

○**조은희 위원**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품격을 지키고 제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러면서 법안소위를 안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집권여당의 오만함을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절박한 민생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돈 살포하는 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조은희 위원** 이재명의 명령이지!

○**위원장 신정훈** 질서를 좀 지켜 주세요.

○**박정현 위원** 무슨 돈을 살포하는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초기에 집권했을 때 50조 원 투자한 것은 그것은 돈 살포 아닙니까?

○**김종양 위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협조할 생각을 하세요.

○**박정현 위원**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제대로 협조하고 국민들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집권여당의 품위를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의를 좀 갖추세요, 예의를!

○**김종양 위원** 누가 그렇게 국민의 명령을 파는가요, 차라리 이재명 지시라고 이야기……

○**조은희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은희 위원** 신상발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사회 진행도 무시하고 위원님들의 발언권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주장만 계속하겠다면 이 회의가 무슨 놈의 회의겠습니까. 제가 다른 위원회 위원장들이 내세우는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 여러분들한테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위원회의 회의가 마을에서 하는 그런 주민회의보다 훨씬 더 못해요.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정말 방해하거나 또 상대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를 놓으면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방해하는 걸로 간주하고 회의법에 근거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 다섯 분 그리고 비교섭단체 한 분까지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또 검토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체토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조은희 간사님 한 분만 간단히 1분 내에서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1분 아니고요. 아까 제가 5분이 아니고 2분 했으니까요, 3분만 주십시오. 아까 처음 발언할 때 다른 위원님들 5분 할 때 저는 2분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5분 하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위원장 신정훈** 그 문제는 다수 위원님들도.....

○**이광희 위원** 그럴까봐 내가 쟁여, 5분!

○**조은희 위원** 시간 안 쟁습니다.

○**김종양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발언 계셨는데도 계속 튀어 나오네.

○**조은희 위원** 회의록 보실래요?

○**이광희 위원** 아까 5분 줬어요.

○**위원장 신정훈**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분 쓰신 분도 있고 3분 쓰신 분도 있고 5분 쓰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도 1분 이상 남았어요. 조은희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1분만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신 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 합의를 얘기를 하시고 소수당을 배려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21대에 행안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위원이 지금하고 위원수가 똑같았는데요. 그때는 9명, 9명씩이었는데 우리 윤건영 간사님께서 11명, 11명 하시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임을 앞세워서 지금 하시는 건데 우리보고 소수당을 배려 안 하신다니까 제가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이 저보고 품위를 안 지키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품위를 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발언을 할 때 저한테 폭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래서.....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30초만 더 드리시지요.

○**조은희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위를 구성해서 이 법안이 소위에 가서 제대로 좀 논의되기를 바라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게 이재명 의원이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위원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이것은 소위에 회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호 법안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이름을 거론하시고 또 소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1분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방금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소위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안은 법안소위 1, 2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자라는 취지에서 소위 정원을 늘리자라고 했던 겁니다. 늘린 정원에 비교섭단체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과 저와의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라도 소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안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자꾸 소위 구성이 안 된 탓을 민주당한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은 바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말은 좀 똑바로 합시다. 서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실 게 없습니까? 저는 법안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면 얼마든지 밤이 새더라도 논쟁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는 프레임을 걸고 가십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해서 법안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안 숙려 기간도 충분히 지켰고 입법공청회도 다 했습니다. 이제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만 덧붙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지, 상대방에 대한 비하 또 아주 격한 고성,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체 위원들이 심사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하명법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시키더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인격에 대한 대단한 손상이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절제해 주시고 또 그런 단어 아니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사를 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의 진행권을 좀 더 강하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회의 전에 저도 의사진행발언 2분만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1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것은 제안한 법이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법 맞습니다. 3월 24일 날.....

○**위원장 신정훈** 자, 끊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지금 이달희 위원님은.....

○**이달희 위원**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끝까지 들어 보지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끝까지 안 들어 보시고……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께서는……

○**이달희 위원** 말을 시작하는데 끊으시고, 2분 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의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달희 위원님은 더하실 분이에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2분 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끝까지……

○**위원장 신정훈** 제가 사회자로서, 진행자로서 분명히 사회권을 반드시 이제 관철시키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달희 위원** 2분 주셨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고요.

○**이달희 위원** 제가 끝까지 아직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폄하하고 비하하고……

○**이달희 위원** 폄하 안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것 발의자가 이재명 대표발의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시켜서 하는 법이냐……

○**이달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재명 대표……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달희 위원** 저한테 2분 주셨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인지 아닌지 끝까지 들어 보셔야지요, 위원장님!

○**윤건영 위원** 진행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원래대로 그냥 처리해 주세요!

○**조은희 위원** 아니, ‘우리 민주당’이라 그리시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오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끝까지 안 들어 보시고……

○**조은희 위원** 더 이상 이런 회의는 우리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 드렸고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렸고 다 했어요. 더 이상 발언 중지해 주세요.

○**용혜인 위원** 똑같은 말을 몇 명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 아닙니까?

○**이달희 위원** 한 마디 했는데 어떻게 마이크를 끊니까?

○**위원장 신정훈** 앉아 주세요.

○**이달희 위원** 끝까지 안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리는지!

○**이광희 위원** 한 얘기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달희 위원님!

○위원장 신정훈 제가 충분히 발언 기회도 드렸고 또 가이드라인도 이야기 드렸어요. 양해도 구했고.

○조은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신정훈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달희 위원 2분 아직, 지금 2분의 8초 썼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달희 위원님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달희 위원 끝까지 들어 보시지도 않고 평가를 하십니까?

○위원장 신정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 좌석에 놓인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서 곧바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고로 이상민……

○조은희 위원 저희는 여기에 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셔도 됩니까?

○윤건영 위원 그냥 진행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어떻게 진행할 수 있어요? 간사님 같으면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김종양 위원 아니,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양 간사들 소위 합의하려 가세요.

○용혜인 위원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오늘 이 회의에 발언하시고자 계신 분들은 앉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배준영 위원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지금까지 회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보셨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야지 놓고 또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 저희가 언제 야지를 놨습니까.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법을 이재명 대표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못 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앉아 주세요. 발언을 앉아서……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님의 ‘우리 민주당’이라는 얘기할 때까지는 저희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앉아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발언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서서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정훈 앉아 주십시오. 발언권 드릴 테니까 앉아 주세요.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이게 뭐니까?

○배준영 위원 간사님, 우리 계속 있어야 됩니까?

○조은희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세요.

○조은희 위원 혼자 하시고 싶으면 혼자 하십시오!

○용혜인 위원 일하기 싫으면 가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소위를 해 주십시오, 소위를!

○윤건영 위원 소위 하자니까요.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발언……

    소위 구성하세요, 소위 구성하시라고!

○조은희 위원 소위를 합의를 해 주십시오.

○김종양 위원 소위를 합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소위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법안 심의합시다.

○위원장 신정훈 민주당 마음이 아니지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논하는데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회의 진행해 주시고, 앉으세요.

○위원장 신정훈 앉아 주세요.

○정동만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재명 대표법을 이재명 대표법이라 하는데…… 이재명 대표법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앉아 주세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히 인내……

    앉아서 발언해 주시라니까요.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니까 저희 발언권을 안 주시니까 나온 거예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이재명의 ‘이’ 자만 나와도 못 하게 하시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또 그렇게 과장하지 마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 앉아 주십시오. 회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희랑 중대본에 같이 가서 수해 상황을 더 점검하시지요. 위원장님 모시고 갈게요.

○위원장 신정훈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발언한 건 뭐예요?

○**배준영 위원** 저희는 수해 현장 갈게요. 마음대로 해 보세요.

○**김성희 위원** 수해 현장 가 가지고 방해하지 마시고요.

○**용혜인 위원** 일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광희 위원** 지금 그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회의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조은희 위원** 그냥 일부러 민방위복 입고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신정훈**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모습을…… 국회가 수해 그리고 민생,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앞에 국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또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그리고 또 재난피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제가 사전 조치했다는 것을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위원장과 간사가 이를 양해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고기동 차관이 대참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체토론 중에 정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차관님께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의 별도 순서는 없이 신청한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 중에 본인의 의견들을 말씀하신 분을 제외하고 손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손을 둡)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국민의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행안위는 행안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오늘 차관님이 대참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행안부에게 더 질문을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물가가 오른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의미 없는 말들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 고물가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못 하고 있고 골목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앵무새 같은 공방을 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정말 토론을 하고자 질의 대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하면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로 보면 2년 연속 역대급의 세수 평크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감세 하면 경제 활력이 높아질 거다, 투자가 늘어날 거다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투자 모두 다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최근 나온 KDI 보고서 보면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에 1.52%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소매판매는 5월에 각각 1.4%, 0.9% 감소했고요.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지난해에 91만 1000명이었는데 2022년의 82만 명에서 9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KDI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내수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인상률의 절반도 안 되는 1.7%로 결정이 됐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주저앉은 서민들의 씁쓸이는 또 한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조건은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만 골라서 찔끔 지원하는 핀셋·생색내기 정책으로는 안 되고 살인적 고물가에 감소하고 있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특단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부의 지금의 경제 상황을 타개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1% 부자들 세금 덜어 주는 게 경제정책의 유일한 원칙이자 방향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1%가 아닌 99%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 민생경제로 맞서야 하고 오늘 행안위가 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무조건 암도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국회의 의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여러 가지 효과는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 중에 한 4주에서 5주 정도 플러스로 전환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과연 그 기간 동안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통계야 말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아주 잘 보여 주는 통계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야 한다, 4주·5주 후에 또다시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오히려 보여 주는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말로만 ‘민생 민생’ 외치다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른 입법공청회도 실시했습니다.

법안소위 구성이 안 됐던 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계속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여야가 허심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안을 만들자, 그리고 그 대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위로와 위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이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참 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준비해 온 PPT를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의 서민들, 골목경제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비교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외식업의 일종의 폐업률을 봐도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가게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아진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되묻는 겁니다. 서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무능과 무대책과 무책임, 3무 경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표를 봐 주시면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표입니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냐, 경기가 좋을 때 재정정책을 펴는 게 좋으냐 아니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 나쁠 때 재정정책을 펴는 게 좋으냐라는 걸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 자료에 의하면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3배나 더 높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즉 지금처럼 서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놓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법을 논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치적인 공방만 일삼다가 모두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행안부차관께서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즉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전지출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바로 서민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러한 역할들을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차관께서 나와 계시지만 차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계신 거니까,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다, 지금. 정책은 늦으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체 토론 시간에 이번 입법을 통해서 서민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을 최대한이라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계산된, 아주 의도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사실 대체토론을 할 기분조차 생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법이고 또 지금과 같은 아주 엄중한 시기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게 굉장히 힘이 되는 법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다시피 작년 경제성장률이 1.4%, 올해는 2.3%에서 0.2%p 올라서 2.5% 정도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났지요. 세수 평크가 56조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부자감세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올해도 최소한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세수 평크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특히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에 달하고 지난 5월 달에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0.69%, 이것은 사실 어제 보도였습니다마는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자의 폐업률도 역대 최대이고 98만 6000명,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계대출의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이고 역시 작년에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 건수도 12만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 시기와 마찬가지로 아주 긴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비롯해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 남미, 거의 많은 나라들이 재난지원금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도 일시적인 이전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일본, EU…… 싱가포르·홍콩·호주·뉴질랜드 이 4개국은 모든 가계에 지급하는 일시적 이전지출 정책을 실시했고 그저께 이성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만 같은 경우는 이미 2009년도에 이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시적 이전지출 정책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작년 지급 경우에도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세수 초과가 발생했는데 이 세수 초과분을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장률을 웃도는 그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을 당연히 해소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만도 그러하고 있다 그런 걸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입법공청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 CDC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서, 그다음 보시지요, 일단 96% 이상의 활용률, 굉장히 높은 활용률 그리고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인 긍정적 평가 이런 게 정부 당국에 의해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용처도 3분의 2 이상이 공공주택 주위의 상가에서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싱가포르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창출 효과 이 것도 명목 GDP의 0.05%에 해당했고 이 바우처의 발행금액인 2억 3790만 달러에 비해서 경제창출 효과가 훨씬 더 웃도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 이런 것만 봐도 마땅히 민생

위기 극복 조치법을 통과를 해서 지금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 어떤 논쟁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입법공청회를 거치고 또 절차를 진행해 가고 있고 또 소위 같은 경우는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소수당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자세, 태도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두 분이 다 발언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가 국민들의 눈물처럼 여겨집니다. 지난 선거 과정을 다니면서 비어 있는 점포 또 살려 달라는 아우성을 치는 자영업자들 국민들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아도 그분들은 잘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금리와 물가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재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매 분기마다 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에 정부와民間의 기여한 정도를 상세히 집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9개 분기 중에 7개 분기에서民間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정부가 끌어내리는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民间이 GDP를 1.3% 성장시킬 때 정부는 0%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수 부문만 따로 빼어 놓고 보면 소비지출 항목에서民间소비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0.4%p 견인할 때 정부소비 기여도는 0.1%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총선으로 인한 재정지출이었습니다. 내수 부문 중民间투자 항목에서는民间투자가 0.6% 성장했지만 정부 투자는 -0.1%로 우리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수년간 국가경제를 떠받친民间소비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民间소비가 GDP에 비해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물가 치솟는 속도가 빨랐던 최근 1년간 GDP에서民间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GDP 함수에서 투자, 수출,民间소비 모두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정부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민생고가 극심할 때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일단 살리고 봐야 합니다. 뒤늦게 회복하려고 하면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5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36조 4000억 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을 했습니다. 윤 정부가 낙수효과로 민간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고 선택한 정책은 범인세 인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소비 효과에 전혀 진작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수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민생경제, 지방경제는 더 극심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비용은 누군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부담은 정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부터 해외 선진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내수의 부진이 내수의 침체로 이어지고 실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오늘 논의하는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국회의원이 되고 첫 번째 안건 문제를 대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회의를 파탄 낼 결심을 하고 들어와서 방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적으로 회의 방해를 하고 마치 쇼처럼 회의에 참여해서 급기야 퇴장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이게 국회의 실력이고 모습인가 하는 안타까움도 좀 들고요.

이 건이 나오게 된 이유,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경제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굳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서민경제가 파탄되고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서의 법률적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집권당이 무능할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와 필요성에 대한 얘기하고 또 하나는 법률적 위반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어저께 공청회를 통해서 거의 통쾌하다시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저도 걱정한 게 어쨌든 처분적 법률이냐 위헌이냐 이렇게 봤는데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는 게 양쪽 찬반을 토론하는 진술인들이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처분적 법률 위헌은 아닌데 문제는 집행적 법률에 있어서의 문제를 봐서 정부의 핵심 권한 중 하나인 재정권을 사실상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삼권분립에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는 반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새 비목을 정부의 동의 없이는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술인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 계셨던 진술인은 ‘그러면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 말씀과 ‘정부의 재정권은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오히려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삼권분립에 위배되지도 않고 처분적 법률이 아닌 문제도 아니고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도 없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고 오늘 대체토론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안을 상의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전부 여당 위원들께서 나가신 상태에서 착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들을 위한 조처, 여기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차관님, 총괄적으로 한번 더 정부의 입장 또 차관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면 듣고 이후에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의 논란이라든지 국가 또 지방의 재정부담 문제가 있고요.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논의들을 상당히 안 하셨는데요. 제 생각으로 한 4000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 중에 거의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마 지급받지 못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시고 있는 국민이 저희가 추정컨대 한 1000만 명 정도 되시고요. 4000만 명의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한 7~8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신정훈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4000만 명이 지급을 받으려면 지역사랑상품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형으로 받으시든지 지류 상품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카드형이 이런…… 이런 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카드가 월 최대 생산 가능한 게 한 400만 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4000만 명 국민께서 받으시려면 1초에 1장씩 신규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립니다.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로 지류로, 만약에 종이 상품권을 받으시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3조 정도 지류 상품권이 발행돼야 되는데 전국에 한 2억 장 정도가 배포가 됩니다, 현금성에 가까운. 그것 아마 상당 부분 속칭 깡이 일어날 것 같고요. 아마 전국에서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조폐공사에서 단기간에 2억 장 또는 3억 장을 발행할 수 있을지도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도 고려하셔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품권 사용하시는 데 보통 8~10개월 정도 우리 국민들께

서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즉 4개월 만에 이것을 쓴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헌성의 논란, 정책적 효과뿐만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정훈 차관님 말씀하셨는데요. 차관님께 질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춘생 위원 예.

아까 위헌성 얘기를 하셔서요. 어떤 부분이 위헌성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공청회에서도 여러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산편성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문제, 결과적으로 또 추경을 강제해야 되는 문제, 여기에 대한 논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춘생 위원 국회는 입법으로 예산 지출을 수반한 법안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위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무상보육 실시할 당시에 국회에서 굉장히, 저도 실무자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엄청나게 요구가 있었고, 물론 문제는 그 당시에 시기상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논박은 있었지만 이것이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추진을 했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호응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었고 그것에 입각해서 정부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는 정부가 지출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입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가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새로운 예산을 지출하려면 예산부수법안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위헌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혹시 차관님 발언 중에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차관님 발언 중에 민생회복지원금 발행 유형이 지류가 있고 카드가 있고 모바일이 있는데 모바일을 활용한 발행 방식, 지급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모바일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카드형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지류형이 10%, 모바일형이 한 20% 정도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 제기를 드렸던 건 한 70% 되는 카드형 그리고 10% 되는 지류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형은 자치단체별로 모바일형을 쓰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른, 많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어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240여 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95%에 가까운 224개인가요, 어제? 제가 정확히……

○**박정현 위원** 204개, 84%.

○**위원장 신정훈** 204개, 84%였습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일상화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당히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어려움에 또 해결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셔 가지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차관님, 저희들이 공청회에서 이제까지 주로 논의된 것은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이런 문제였는데 차관님이 오늘 뜻밖에도 기술적인, 실무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만드는 방법, 모바일로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종이로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요 기간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카드 형태는 7~8개월, 종이로는 몇 주…… 한 2~3주 정도 걸립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2억 장을 찍는다고 치면요. 조폐공사에서……

○**이상식 위원** 지금 차관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폐공사의 어떤 조폐 능력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략의 본인 추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한 5~10%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다른 지불수단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처럼 전체 10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식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조폐공사나 이런 형태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한다면, 저는, 차관님이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어떤 공무원 사회의 일종의 행정편의주의 같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또 정부에서 가용한 최대의 자원을 풀 가동한다면 저는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카드 제조회사의 월 최대 말씀드린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아까 400만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통 100만 장에서 400만 장 사이에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식 위원** 지류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이로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것도 조폐공사의 역량이 제가 보기에는 월, 상당 부분 제약이 됩니다. 그렇게 억 단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식 위원** 나중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차관님, 이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돈을 주는 게,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 주면 다 쓰는 것이고.

그런데 차관님은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했을 때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코로나 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체 효과와 대체 소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 30%, 나머지 70%는 다른 곳에 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양부남 위원** 그 당시 한계소비성향이 36%까지 나왔거든요, 일인당.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말씀은 이번에 13조를 쓴다면 실제로 쓰이는 거는 3조 정도라는 결론 계산이 됩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13조에 대해서 3조가 실제로 소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이 된다는 의미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축이 되든지 다른, 원래 쓰려고 했던 거에 대체가 됐든지 그런 효과가……

○**양부남 위원** 대체요? 차관님 생각은 이 긴급지원금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숫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긴급지원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지금 3조도…… 차관님 의견대로 하더라도 3조가 소비로 쓰인다면 안 쓰인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더 어려운 분들한테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면.

○**양부남 위원** 아니,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처럼 경제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어렵다는 것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민생의 어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정책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저도 한번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계소비성향 관련해서 1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2차 코로나 상생 회복지원금 그거 합쳐 가지고 지난 입법공청회에서도 나왔는데 한계소비성향이 그러니까 22%에서 한 45%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현금성 지원이었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때도……

○**이해식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아까 한 5% 정도였던 거고 거의 카드에 충전해 주는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지급한 후에 4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 돼 있고 4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계소비성향은 훨씬 높아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걸 카드형으로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류형으로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급되고 난 이후에 4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걸로 돼서 어떻든 실무적으로 지급하는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아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비율을 확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모바일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쓰고는 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식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서울은 조금 모바일에 가까운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대개는 카드형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편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70%가 쓰는 것입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그거 쓰시는 분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카드를 선호한다는 얘기인데 다만 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7~8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이건 조금 실무적으로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모바일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모바일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술적 검토 이런 걸 충분히 해 보셨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모바일을 한다고 해서 특히 어르신들,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쓰시는 데는 말씀하신 기술적인 어려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연로하신 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글쎄요,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차관님께서…… 차관님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자꾸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쓰던 것을 그냥 대체해서 쓰지 않느냐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무슨 검증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홍민기 선생님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가운데 30%는 기존 소비지출 대체를 한 건 맞는데 70%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했다고 그런 연구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조밀하게 검토를, 분석을 해 보셔야지

되는 문제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돈이 생기면 그냥 새로운 소비를 하지 있는 소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그때 담당 국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구청장을 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구청장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대덕e로움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발행한 예산 지출액 대비 두 배가량의 지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맹점 30%가 20% 이상의 매출 상승효과가 나타났어요. 나머지 가맹점은 5%에서 조금, 20% 그 사이의 상승효과가 드러난 거고요.

이 정도면 저는 지역화폐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수단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을 넘어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대체하는 정책으로 잘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실무적인 부분의 보완은 어떻게 할지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들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답변석에 와 계신 차관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 업무를 총괄했던 본부장이시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업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몇 차 재난지원금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2020년 첫 번째 긴급재난지원금……

○위원장 신정훈 첫 번째?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그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한 적이 있지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러 기관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행안부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이런 용역을 주고 또 최종보고서를 받은 적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KDI에 직접 한 건…… KDI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이것은 아마 차관님이 계실 때 요청했던 연구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정확하게…… 용역 시작한 데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고요.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자리에 오시면서 그런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소비진작 효과라든가 경영안정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분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구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단히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 분석에 정부가 책임 있는 또 재정지출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연구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이렇게 박한 평가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지금 당시에 국민들의 효과 그러니까 반응은 정책이 수립될 당시보다 훨씬 더 지지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체감도가 굉장히,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 재난지원금 지원 이전에 정책 수립 단계에서의 여론보다도 집행 이후 단계에서의 여론들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차관님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효과분석에 대한 행안부의 자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한계소비성향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 KDI의 연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30% 정도 수렴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했던 여러 나라들에서의 평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당시 2020년 5월 20일경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한 3주 정도 집중적으로 사용됐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30%가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왔지만 연쇄적이고 간접적이고 추후 계속된 그런 성과를 생각해 본다면 나머지 70%는 완전히, 전혀 경기 진작이라든가 생활 안정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기존 소비로 상쇄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던, 대체 소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로 상쇄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정도로……

○**채현일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차관님, 2020년도에 문재인 시절에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이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총괄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채현일 위원** 그 당시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나 여러 가지 지역상품권하고 5% 정도, 그 짧은 시간대에 코로나 지원금이 제대로 좋은 효과를 봤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하셨습니까? 지금하고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금 논의하시고 있는 이 법에서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채현일 위원** 그때 당시 코로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급 수단에 대한 고민들은 따로 없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출력해 보니까 그때 KTV 국민방송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채현일 위원** ‘14조 원의 큰돈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긴급하게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4조 원의 큰돈을 국민께 드립니다’ 하고 ‘결국은 소비를 진작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서 ‘지역 소상공인, 임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정책적인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꾼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니 그 사용처에 대해서 아까 같은 다른 데 쓰거나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기한을 정하고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주무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4개월 동안 준비해서 3개월 동안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코로나 지원금을 했다면 이번 거는 더 쉽지요. 아까같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바일이니 뭐니 하는데 그거는 차관님으로서 또 이런 경험을 했던 주무 책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이 법에서 지금 정해 놓으셔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엄격하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한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되어야 하는 시급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축조심사 자료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2페이지, 제정안의 제명,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축조심사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 목적 및 정의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재명 의원안은 제명이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안’으로 되어 있고 서영교 의원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도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 규정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안의 경우에는 정의 규정이 없고 서영교 의원안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명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라는 단일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보다는 ‘특별조치법’이 보다 적절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민생위기 극복’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안이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에 있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핵심 용어이고 반복 사용되므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인당 25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라는 중복되는 문구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수정…… 3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명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으로 하고요. 1조의 목적은 이재명 의원안과 동일하게 하고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 제1호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제4조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2호에 있어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의는 서영교 의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 주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사자료 4페이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관련 규정입니다.

이재명 의원안을 보게 되면 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의 경우에는 장기 반복적 사무에 보다 적합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일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개별 조문에서 각 주체에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협조 의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체단체는 지원금 지급 주체로서 개별 조문에서 지급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조 의무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재명 의원안은 제3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서영교 의원안은 제4조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6조에

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의 성격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현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준용’보다는 ‘따른다’는 표현이 보다 더 적절해 보입니다.

5페이지의 수정의견입니다.

책무에 관한, 이재명 의원안 2조와 서영교 의원안 3조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같은 경우에는 1항에서는 특별(조치)법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기 위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2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사랑상품권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역사랑상품권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집행상의 어려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견이 있는데, 행위의 의무 주체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행위의 의무 주체의 책무 부분은, 의무 주체 부분은 좀 반복적이고 조금 이런 경우에 상정성이 있는 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어디에 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되어…… 어디에 어느 곳에 누구에게 부과되어 있습니까, 몇 조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 국가의 경우에는……

○위성곤 위원 몇 조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가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담을 국가가 하는 수정의견의 제5조를 보시면요, 조문대비표 18페이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18페이지,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한다’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비용을 보조하는 의무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가 이 법률에, 11페이지 4조에 보시면 개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혹시 더 질문이 필요합니까?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삭제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저는 그동안에 법안을 다뤄 온 경험으로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두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모두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 지역사랑상품권만 해 가지고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워서요 일부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이 이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는 데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문제, 전문위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조항이 있고 없고가 이 법의 효력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적으로 더 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협조 의무라든지 책무 규정이 없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안의 2조 이 부분을 살리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이 주제는 수석전문위원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7페이지 지급대상.....

○위성곤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 2항인데요, 2항인데..... 이게 3조 2항이 아니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서영교, 이재명 안의 3조 그리고.....

○위원장 신정훈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예, 혹시.....

○위성곤 위원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부 할 거냐, 아니면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열어둘 거냐 그런데.....

○위원장 신정훈 그 문제는 우선은 좀 남겨 두고 그다음 조항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지급액과 지급수단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먼저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은 이재명 의원안은 전 국민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은 전 국민입니다. 다만 여기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장기체류자격자 등 추가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과 지급수단을 보시면 이재명 의원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고요. 서영교 의원안은 1인당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급대상에 있어서의 '전 국민'이라는 표현은 좀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를 고려하고 또 자자체별 지급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0년·21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격자입니다.

영주권자는 20년·21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고 국내에서 근로·납세·소비 등 경제활동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장기체류자격자는 일시적 국내에 체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21년에 지원금 지급대상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민의 경우에는 20년·21년 지원금 지급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게 현법재판소가 24년 3월 위헌결정을 하였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도 난민에 대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자격자와 동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정시설 등 수용자와 장기국외체류자의 제외 필요입니다.

교정시설 등 수용자의 경우에는 20년과 21년 지원금의 경우에 제외 여부를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제외되지 않고 지급대상에 포함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4개월 이내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한다면 기한 내에 사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장기국외체류자의 경우에는 20년·21년 지원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장기국외체류 시에는 국내 소비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급액입니다.

지급액 관련해서는 하한 25만 원의 어떤 적정성 측면인데요. 21년 지원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두 시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등지급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차등지급의 장점과 차등지급의 단점이 또 역시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지역별로 경제·재정 상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지급의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급수단에 있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으로 조 제목을 정리하고요. 이것의 1항에서 지급 주체를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20년과 21년과 동일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호에서는 지급대상을 그리고 2호에서는 제외 대상을 하는데요. 1호의 지급 대상에서는 가목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으로, 원칙적으로 주민으로 하고요. 추가되는 것이 결혼이민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영주권자, 나목입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안에서의 장기체류자격자를 제외하게 되면 20년과 21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라목에서는 난민을 추가합니다. 대신 서영교 의원안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호에서는 지급 제외 사항인데요. 먼저 가목에서는 장기체류자를 제외합니다. 다만 중도 귀국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13페이지 나목에서 수감자 등을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만’ 단서를 뒤서 중도 출소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목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수용자, 소년원 등 유사 수용자 및 소비행위 곤란자를 추가하게 되고요.

여기 2항이 지급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이 지급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좀 열어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지급액이 되겠는데요. 1인당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단서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당 25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액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국비보조액의 범위에서 달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량을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이 법의 지급시기인데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이 법 시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건데 이따 부칙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하위법령의 제정을 위해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어느 정도 몇 개월의 기간을 연기할 필요가, 기간에 유예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급시기는 그래도 안과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수정하게 되면 유사한 지급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항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다 자세한 입법례 참고해서 서영교 의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6항의 경우에는 일반적 입법례를 통해서 그 밖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급대상·지급액·지급수단에 대해 굉장히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정부 권한과 재량을 상당 배제를 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님.

○**모경종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 대한 지급 관련된 검토 또는 해당 내용의 고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건가요? 분명히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데,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영유아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6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이 고려된 지점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 그 부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에는 세대주한테 지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급대상을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구체적 영유아한테 가는 것은 영유아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세대주에 가는 게 자연스럽게 훌러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소비를 영유아가 할 수도 없거든요.

○**모경종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아까 우리 행안부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카드 수량 이런 것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대주에게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보다는 훨씬 더 적은 카드 발행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을 덧붙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4조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주체가 변경되면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수용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확신이 안 드는데 일단은 이것 제외하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다 주는 돈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건데 군이 이런 사람들 제외 할 필요가 있는지. 다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치료감호시설이나 교도소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에 치료감호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자가 주소를 옮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현재 주소지는 A군에 되어 있는데 재소하는 곳은 B군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든지 A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든지 소재한 B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면 평등권 침해도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신정훈** 혹시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은 지난 2020년, 21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소자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당시에는 현금으로 준다든지 해서 영치금 이런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지급수단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 보이고요. 또 단서조항을 둬서 이분들이 4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기간 이내에 출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양부남 위원** 만약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지 않는다, 현금으로 준다면 줄 수

있는 건가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줬었고요. 영치금으로 줬기 때문에……

○**양부남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고 현금으로 준다면 제 생각은 평등권도 평등권이지만 이게 기본적인 취지가 소비 촉진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의견을 반영해서 좀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예, 위원님들께서 주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이 부분 제외 대상에서 저희들이 삭제를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 잠시 후에 정회할 시간이 있거든요. 정회 때 조금 의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 더요.

지금 수정의견에 ‘다만 1인당 25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국비 보조액의 범위에서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결국 시행령을 만들고 나서 또다시 지방인 경우는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 결정을 하려면 조례,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자자체장한테 권한을 주게 되면 지방의회까지 안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판단인데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일 텐데……

○**위원장 신정훈**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정회 후에 의견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최종 성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수정안과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함께 잠시 후 정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조정 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17페이지 비용부담 그리고 지급절차와 사용기간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페이지입니다.

비용부담과 지급절차입니다.

이재명 의원안은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하지는 않고요. 서영교 의원안은 그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명확하게 날짜까지 들어가 있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사용기한은 이재명 의원안은 4개월,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9월 30일 발행 후 12월 31일까지니까 3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비용부담과 지급절차입니다.

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인데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조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급절차 규정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가 비용 지원을 한다는 의무가 분명하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절차 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절차별로 적정 기간을 사전에 예측해서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용기한입니다.

사용기간이 길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분산되고 신규 소비를 유발하지 못하고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인당 25~35만 원의 금액은 기한 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전환복무자 같은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용기간 특례를 두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8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환수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급기준을 상향하거나 또는 환급이 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8페이지의 조문대비표입니다.

수정의견 제5조를 보시면 ‘국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한다’고 해서 전부 보조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요. 절차 규정 같은 경우에는 날짜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19페이지의 제6조 조항의 유효기간과 환전 등에 관한 특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항을 보시면 ‘4개월 이내에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단서 조항에서는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무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을 해 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의 2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한 60~80%만 사용하고 잔액을 환수받을 수 있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00분의 90 정도 또는 아예 환전이, 환급이 불가할 수 있게 규정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국가의 보조에 관한 사항은 재정 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 역시 조문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조문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법률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게 법률로서 동의할 수 있는 법률이냐는 거지요. 조문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법률…… ‘소지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역사랑상품권법에 환급 조항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급이 불가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위원장 신정훈** 그 문제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은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은 분명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법은 60~80% 정도니까 그거보다 더 올리시면 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문제는 역시 정회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관님한테 이 문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시행되면서 주로 도회지와 같이 다양한 소비처가 있는 곳하고 또 시군 소재지라든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비처가 존재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소비처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일수록 사용할 수 있는 소비처가 구체적으로 많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식품이라든가 다양한 생활 생필품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생활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지금 30억이라고 하는 매출 규모에 한정돼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활성화에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관련된 규정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역사랑상품권,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맹점이 매우 제한됩니다. 이 법에 따르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로마트 이런 쪽에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로마트가. 그것은 조금 더 다를 문제인 것 같고요. 하나로마트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차관님께서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의 차관님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금 더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활하시는 생활권 내에서의 다양한 소비지 또 소비 상점이라든가 그런 업체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읍면 지역에, 이 법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일상적인 서민들의 생활활동이라든가 지역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전국의 거의 204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굉장히 불리한 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야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한번 좀 검토해서 새로운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잠시 후에 정회를 통해 가지고 문안들을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지급시기와 시행일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1페이지입니다.

지급시기를 보시면 이제명 의원안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9월 30일 이전이 되겠고요.

시행일에 있어서는 두 제정안 모두 공포한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같은 경우에 법률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수행을 위해서 대체로 시행일을 몇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행위를 위한 부칙 신설을 하게 되면 사전절차의 조기 착수가 곤란하지 않는, 조기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페이지, 조문대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제4조 4항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한다고 하고 23페이지—부칙입니다—시행일을 이 법 공포 후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시행일이 곧 지급일이 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 있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조문을 뒤서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대상 선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국비 보조를 위한 사전 절차의 이행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는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주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위원님들께 논의해 주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아까 의견 주신 내용들이 또 수정안이……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신정훈** 축조심사 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법률안 대안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17시26분)

○**위원장 신정훈** 이견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77조와 제71조에 따라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대안은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명 의원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서영교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이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대안에 대해서 국회법 79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제정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지난 7월 16일 화요일에 동일한 주제인 의사일정 제1항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거친 점을 감안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여 나라 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효과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정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또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더 이상 이 목소리를 외면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상임위 회의를 지켜보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벼텨 오신 국민 앞에 뭐가 되었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도중 퇴장하셨고 행정안전부 또한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무책임한 태도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우 피해가 막심한 시기에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도 합니다. 약도 제때 써야 약발이 듦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힘들다는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다툼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법률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정부 여당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이재명 의원의 공약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이재명 의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격정이 있다면 이 특별조치법안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공을 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야당이 내놓은 것이어서 반대한다면 이에 상응하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생 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쉽습니다.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거듭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준비해 주신 국회 공무원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를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준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신문근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정책기획관 정창성  
기획재정담당관 박성민  
법무담당관 나채목